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대전광역시 대덕구	심의일자	2024. 10. 31.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○] 기타(건축물 해체)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서정실		
대지현황	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		
	지번 221-12번지	관련지번	
	대지면적 447.6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227.61㎡	건폐율 50.85%	층수 지상4층
	주용도 근린생활시설, 다가구주택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1개동
	최고높이 11.9m	용적률 169.34%	연면적 합계 757.97㎡

구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 건축물 해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해체순서 계획도에서 한 차수에 지붕층에서 1층까지 해체 후 다음 차시를 해체하는 것이 해체 위험성이 크고, 마지막 구간에 전도 위험이 있어 해체 순서를 다시 검토 바람○ 외출 쌍줄 비계 검토시 기본 풍속을 28m/s를 32m/s로 변경해서 재검토 바람○ 쌍줄비계 검토 시 작업 하중을 고려해서 재검토 바람○ 8m 도로변에 차량 출입구를 제외하고, 쌍줄비계 설치바람○ 외출비계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쌍줄비계로 검토바람○ 가시설물 설치 개요와 검토서상의 비계 수직재 및 수평재 간격이 다름. 비계검토서와 일치시킬 것○ 보다 상세한 현장조사를 통한 3차원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할 것○ 10.3 해체순서별 구조설계 도서 표기항목 작성○ 장비 이동 동선 표기하고 철거 장비와 민간 차량의 혼잡에 의한 교통 통제 대책 수립○ 철거대상 건축물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구역에 위치하며, 보차 혼용도로를 접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민간의 보호 대책 수립하고 도식화하기 바람○ 사각지대 없도록 CCTV배치할 것
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------	---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대전광역시 대덕구	심의일자	2024. 10. 31.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○] 기타(건축물 해체)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김호림		
대지현황	대지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		
	지번 388-4	관련지번	
	대지면적 908.2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439.89㎡	건폐율 48.43%	층수 지하1층/지상1층
	주용도 근린생활시설, 화장실	구조 철근콘크리트조, 연와세벽	건축물 동수 2개동
	최고높이 4.5m	용적률 48.43%	연면적 합계 487.89㎡

	구 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	건축물 해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가설비계를 3면만 계획한 바, 4면(출입구 제외)에 가설 비계 설치 검토 바람○ 감시원과 신호수, 살수공 배치 계획도 첨부 바람○ 불법 건축물 부분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해체계획이 수립되어야 함○ 보다 상세한 현장 조사를 통한 3차원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한 구조안정성검토보고서 제출○ 해체순서 구조도에 표기바람○ 장비 이동 동선은 간선도로까지 표기하고 철거 장비와 민간 파랑의 혼잡에 의한 교통 통제 대책 수립○ 철거대상 건축물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구역에 위치하며, 보차 혼용도로를 접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민간인 보호 대책 수립하고 도식화하기 바람○ 사각지대 없도록 CCTV배치할 것
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
	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